

예산총칙

202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계	650,500,000	19,515,000
일반회계	589,220,429	17,676,613
특별회계	61,279,571	1,838,387
기타특별회계	61,279,571	1,838,387
상수도사업	3,056,196	91,686
하수도사업	3,320,801	99,624
수질개선	14,751,108	442,533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16,200	12,486
의료급여기금	733,700	22,011
소득특화사업	6,000,000	180,000
농공단지조성사업	107,110	3,213
공영개발사업	4,037,585	121,128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84,000	2,520
행복주택사업	5,677,854	170,336
청사건립사업	23,095,017	692,85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조서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사업조서 : "해당없음"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,045,505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0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